

# 예산총칙

201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6,392,254	9,491,768
일반회계	283,999,241	8,519,977
특별회계	32,393,013	971,790
기타특별회계	32,393,013	971,790
상수도특별회계	3,327,814	99,834
항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109,567	3,287
수질개선특별회계	65,991	1,980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3,107,600	393,228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119,656	33,59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141,145	34,234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76,968	2,309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224,000	6,720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400,000	12,0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2,689,141	380,674
농어촌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	83,839	2,515
기반시설특별회계	38,292	1,149
담수어양식사업특별회계	9,000	27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65,911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7,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